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 제50조 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유치원등) ②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과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 | 제52조(유치원등) ② 삭제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유치원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1.~3. 생략 | ③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및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좌동 | |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안)

| | |
|--|--|
| <p>1. 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 및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4조제1항)</p> | <p>나. 전문건설업체가 예외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4천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안 제18조제2항)</p> <p>다. 건물, 교량, 터널, 댐등과 같은 동일구조물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리하여 동일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 하고, 도급한도액을 공사종류별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1년간 연기하여 '94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안 제22조제2항, 부칙)</p> <p>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5호)</p> <p>마.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을 기재하는 업무를 건설협회에 위탁함(안 제54조제1항)</p> |
|--|--|

| | | |
|---|--|--|
| <p>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2. 건축물, 교량, 터널, 댐등 공사의 성</p> | <p>질상 자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속 계약하는 공사 제3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한 공사중에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중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p> | <p>액의 하한의 기재 1992년12월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13,789호의 부칙중 "1993년7월1일"을 "1994년7월1일"로 한다. 부 칙 ②(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③(도급한도액기준금 변경신고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자본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p> |
|---|--|--|

| 현 행 | 개 정 안 |
|--|--------------|
|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기재 | |
| 부 칙 이 영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 | 부 칙 |

| 현 행 | 개 정 안 |
|--|---|
|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7월1일.....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59호

| | |
|--|--|
| <p>1. 개정이유</p> <p>주택에 대한 투자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이 1992년 12월8일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1993년 2월20일 공포되어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2. 개정안의 주요내용</p> <p>가. 현재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등록을 년 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적합여부등은 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의 증액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p> <p>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의 이율,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타 예금의 실시지역과 종류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p> <p>다. 주택상환사체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p> | <p>고 모집시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였음.</p> <p>라. 사업주체와 시공보증회사가 모두 파산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10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들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지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p> <p>마. 현재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사협회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을 추가 지정하고 진단 결과는 진단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진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진단수수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p> <p>3. 의견제출</p> <p>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주택국장, 전화번호 503-73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p>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142호

| | |
|---|--|
| <p>1. 개정이유</p> <p>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92.12.8. 법률 제4,530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p> <p>가.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92.12.8. 법률 제4,530호)에 따라, 주택의 대량 생산·공급체제에 적합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정함.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항목)</p> <p>○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방·내화성능, 피난·추락방지성능 ○거주성능: 환기 및 기밀성능, 열환경성능, 음환경성능 ○내구성능: 방수 및 배수성능, 방청 및 방부성능, 유지관리성능</p> | <p>(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항목)</p> <p>○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 ○경량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p> <p>나. 공업화주택의 인정신청서 및 인정서등의 서식을 정함.</p> <p>3. 의견제출</p> <p>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p> |
|---|--|